의안번호	제 41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10월 4일

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 안 번 호	413

제출연월일 : 2023년 10월 4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**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** 밀레니엄타운 내 토지를 매입하여 도서관과 복합문화시설(공연장) 조성을 통해 문화인프라, 교육, 프로그램, 공연 등 도민의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취득 규모는 1필지 19,766㎡(도서관 건립 부지 7,000㎡, 문화복합시설 마련 예정 부지 12,766㎡)이며, 사업비는 약 155.5억원임

○ **충북대표도서관 신축은** 도서관법 제25조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을 건립하여 도내 도서관 협력기반 구축과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·보존, 정책연구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밀레니엄타운 내 도 대표 도서관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건축연면적 6,500㎡(지하1, 지상4), 342억원임

○ **청남대 모노레일 설치는** 청남대 산림자원의 관광활용과 대청호반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남대 주차장에서 전망대에 이르는 350m 구간에 다목적 모노레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1,750㎡, 39.5억원임

○ **보은소방서 청사 증축은** 근무인원 증원(64→116명)으로 사무공간 및 훈련 등을 위한 필수 공간이 협소하여 기존 1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증축면적 693.39㎡, 약 28.7억원임

○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**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**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□ 재산의 취득

≪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≫ **일반회계**

○ 용　　도 : 대표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
○ 위　　치 :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 53-13번지 일원(밀레니엄타운 내)
○ 사업기간 : 2024.
○ 소요예산 : 약 155.5억원
○ 사업규모 : 19,766㎡　※ 도서관(7,000㎡) + 문화복합시설(12,766㎡)
○ 계약방법 : 조성원가에 의한 수의계약 (단가 786,500원/㎡)

≪충북대표도서관 신축≫ **일반회계**

○ 용　　도 : 도립 대표도서관
○ 위　　치 :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 53-13번지 일원(밀레니엄타운 내)
○ 사업기간 : 2023. 8. ~ 2027. 5.
○ 소요예산 : 342억원
- 공사비 30,300,000천원, 설계비 1,900,000천원, 감리비 2,000,000천원
○ 사업규모 : 건축연면적 6,500㎡(지하1층, 지상4층)

≪청남대 모노레일 설치≫ **일반회계**

○ 위　　치 :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신대리 산 25-2번지 일원
○ 사업기간 : 2024.
○ 사업규모 : 1,750㎡(L=350m, B=5m) / 40인승
○ 사 업 비 : 39.5억원
- 시설비 3,700,000천원, 설계비 197,000천원, 감리비 53,000천원

≪보은소방서 청사 증축≫ **특별회계**

○ 위　　치 :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96-8번지
○ 사업기간 : 2023. ~ 2024.
○ 소요예산 : 약 28.7억원
- 시설비 2,359,182천원, 감리비 492,514천원, 시설부대비 12,959천원
○ 증축규모 : 693.39㎡ 증축(2층 123㎡, 3층 570.39㎡)

3.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별첨

4. 관계법령 : 별첨

○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

○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

○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, 제14조

○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

공유재산관리계획

2024년도 관리계획총괄표(14-1)

○ 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	당 초			변 경			합 계		
		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
취득	계	토지	1	19,766	15,545,959				1	19,766	15,545,959
		건물	1	6,500	34,200,000				1	6,500	34,200,000
		기타	1	1,750	3,950,000				1	1,750	3,950,000
	매입	토지	1	19,766	15,545,959				1	19,766	15,545,959
		건물	1	6,500	34,200,000				1	6,500	34,200,000
		기타	1	1,750	3,950,000				1	1,750	3,950,000
	교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타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처분	계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매각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양여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타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
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14-2)

○ 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번호	재산표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전소유자	비고
	지목	소재지	면적					
계	토지	1필지	19,766	15,545,959				
	건물	1개동	6,500	34,200,000				
	기타	1식	1,750	3,950,000				
1	토지	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 53-13 일원	19,766	15,545,959	2024	도서관 등 복합 문화공간 조성	충북개발 공사	매입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2	토지							
	건물	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 53-13 일원	6,500	34,200,000	2027	충청북도 대표 도서관 건립		신축
	기타							
3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신대리 산 25-2 일원	1,750	3,950,000	2024	모노레일 설치		축조

공유재산관리계획

2024년도 관리계획총괄표(14-1)

○ 회계명 : 특별회계 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	당 초			변 경			합 계		
		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
취득	계	토지									
		건물	1	693.39	2,864,655				1	693.39	2,864,655
		기타									
	매입	토지									
		건물	1	693.39	2,864,655				1	693.39	2,864,655
		기타	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타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처분	계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매각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양여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타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
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14-2)

○ 회계명 : 특별회계 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번호	재산표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전소유자	비고
	지목	소재지	면적					
계	토지							
	건물	1개동	693.39	2,864,655				
	기타							
1	토지							
	건물	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96-8	693.39	2,864,655	2024	보은소방서 청사 증축		증축
	기타							
2	토지	이하여백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3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관 계 법 령 발 췌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】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제10조의2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②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·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 ·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	**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**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 1. 공유재산의 취득 ·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. 공유재산의 취득 ·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1.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. 취득 ·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.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.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. 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.

【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】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
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북도의회(이하 "도의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.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. 취득의 경우 : 20억원 나. 처분의 경우 : 10억원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. 취득의 경우 : 1건당 6천제곱미터 나. 처분의 경우 : 1건당 5천제곱미터 **제14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서)**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	**제28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)**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제15호 서식) 2. 공유재산매매계약서(별지 제16호 서식) 3. 양여계약서(별지 제17호 서식) 4. 공유재산매수요구서(별지 제18호 서식) 5. 교환계약서 (별지 제19호 서식)